

## 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2010 중소기업 지원제도(2)

중소기업은 작은 풀씨에서 시작한 우리경제가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뿌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우리나라 총 사업체의 99%, 전체 근로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 세계 속의 거목(巨木)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주체이다.

지속성장의 관건이 중소기업에 있는 만큼 중앙정부를 비롯 지자체, 기금, 은행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육성책은 매우 다종다양하며 그 양이 실로 방대하다. R&D 투자자금 지원, 각종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지원정책은 이미 제도적으로 상당히 정비되어 있으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맞서 분초를 다투며 기업을 키우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 CEO가 갖기지 지원제도 내용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 이를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경련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이하 '경영자문단')은 지난 2007년 말에 이어 중소기업에 필요한 핵심제도를 선별하여 「중소기업 지원제도 요람」을 발간하여, 중소기업 CEO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6개 분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 I.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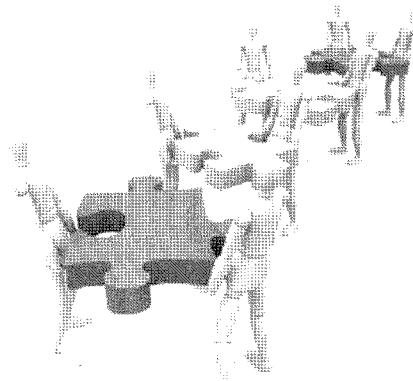
#### 1. 인력 지원제도

##### 1) 지원개요

- 현재 우리경제의 최대 현안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며, 중소기업은 전체고용의 88%(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를 차지하고 있어 일자리창출의 실질적인 보고임

- 실업자가 122만명(‘10.1월)에 달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21만 명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 이와 같은 인력 미스매치 현상은 중소기업과 구직자간에 임금, 복지수준 등에 대한 눈높이 차이에 주로 기인함
- 따라서 중소기업 인력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 현장수요 맞춤형 산학인력양성, 인력의 직접채용 지원, 구인·구직 알선지원 서비스, 각종 인력고용관련 장려금 지원, 인력 양성·국비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고용 환경개선 등



## 2) 지원종류

### ◎ 교육분야

- 중소기업 CEO 대상의 기업경영 노하우 전수 교육을 지원함
  - KSCORE 경영교육 운영사업, 소기업 CEO 교육 운영사업
-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함
  - 단기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
  - 중소기업 사내기술교육과정 지원사업
- 중소기업 신규채용 수요조사에 의해 선별된 미취업자에 대한 인력에 대한 집합교육과 현장연수를 지원함
  - 인력채용 패키지 운영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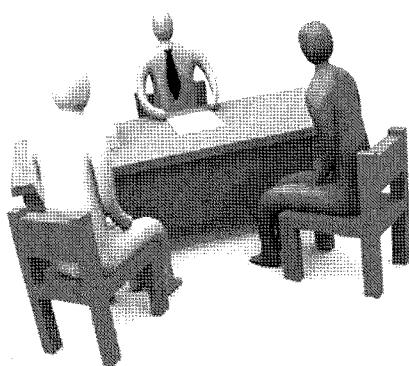
### ◎ 인력활용과 육성분야

- 중소기업의 취약계층과 타 기업 전문인력의 고용촉진을 지원함
  -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사업,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사업

- IT, 지식기반 서비스업 분야 등의 우수인력 채용과 육성을 지원함
  - 기술인재 지원사업, 대학IT연구센터 육성 지원사업,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IT분야 연구개발 고급인력지원 신규사업, IT융합 고급인력과정 지원사업
- 해외 우수인력의 기술지도와 인력도입을 지원함
  - 일본 우수 퇴직기술자 초청 기술지도 지원사업, 해외기술인력도입 지원사업

### 3)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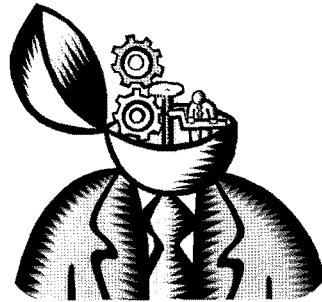
-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을 도모함
- 여기에서 실업의 의미는 워크넷([www.work.go.kr](http://www.work.go.kr))에 등록하여 구직승인을 받으날로부터 기산되며, 청년실업자(29세 이하)와 장기구직자(6개월)를 채용하면 1년에 540만원이 세이브됨.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지원센터 담당자에게 꾸밀히 연락해야 함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사용하는 경우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기업이 전문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원금을 받게되고, 전문인력 범위(노동부 고시 제2007-29호)를 참고하여 활용하면 유용함
- 워크넷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포털사이트로 워크넷을 이용하여 구인·구직 신청을 하게 되면 E-mail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와 맞춤형 인재정보를 받을 수 있음
- 기업의 자산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 지원 등 다양한 국비지원을 활용하면 온라인 교육과 전문 교육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이 기술의 애로해결을 위하여 정보통신 전문설계 및 공정기술 분야 등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국 고급 기술인력을 도입하는 경우 '해외기술인력도입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유용함



## 2. 경영 지원제도

### 1) 지원개요

- 창업 준비 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중소기업의 각 분야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진단과 지도를 통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과 기술 환경의 변화 속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경영, 기술, 인력, 수출, 창업 등 전 분야에 대해 전문가의 컨설팅 비용을 전부 또는 일정 비율까지 지원하는 제도임



### 2) 지원종류

#### ◎ 경영, 기술 컨설팅 분야

- 중소기업의 경영과 기술부문의 애로 및 혁신 관련 컨설팅을 지원함
  -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비즈멘토(Biz Mentor) 지원사업, 수출컨설팅 지원사업
  - KSCORE 경영교육 운영사업, 소기업 CEO 교육 운영사업

#### ◎ 인적자원개발 컨설팅 지원 사업

- 인적자원개발 진단, 근무조건 제도개선 및 관리제도 개선 관련 컨설팅을 지원함
  - 단기간 근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작업장 혁신컨설팅 지원사업, 인적자원개발 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

#### ◎ 상담컨설팅 지원 사업

-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전문상담센터 등을 통한 컨설팅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
  - KSCORE 경영자문사업,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비즈니스 지원단 운영사업, 중소기업 기술 보호 상담센터 운영사업, 가업승계 지원사업 등

#### ◎ 기타 지원 사업

-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사업,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한국형 하든 챔피언 육성사업, 벤처기업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 부품·소재 M&A 활성화 지원사업

### 3) 활용방안

#### ◎ 창립 및 초기기업

- 창업초기의 기업설립 및 경영관련 사항은 물론 향후 고객 충을 비롯 제품군 준비 등을 위해 관련된 상담센터와 교육 관련 컨설팅 지도 사업을 중점적으로 활용하는게 필요함
  - KSCORE 경영자문 운영사업,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비즈니스지원단 운영사업, 수출컨설팅 지원사업 등



### ◎ 성장기업

-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컨설팅 지원 사업을 활용하되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우선 기업의 피요한 분야별 수요를 구분
  - 1회성(단기) 또는 일정기간(장기성) 지속적인 프로젝트성 지원여부를 판단
  - 컨설팅 지원 전과 후의 변화(영향 및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
  - 최종적으로 가급적 비용대비 효율성을 고려하여 활용해야 함

## 3. 인증/인정/확인 지원제도

### 1) 지원개요

- 창업기업 혹은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기술, 제품, 경영역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기술, 품질에 관하여 인증·인정·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함
- 인증·인정·확인에 대한 실적은 여러가지 지원제도 활용함에 있어 선정평가에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중소기업들의 각별한 관심과 준비가 요구됨
- 하지만 무리한 추진보다는 기업의 상황과 역량이 준비되는 시점에서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지원종류

#### ◎ 기업관련

- 벤처기업확인, 기술혁신형기업(이노비즈) 인증, 경영혁신형기업(메인비즈) 확인 등이 대표적인 제도임

#### ◎ 기술관련

- 신기술(NET) 인증제도 등이 대표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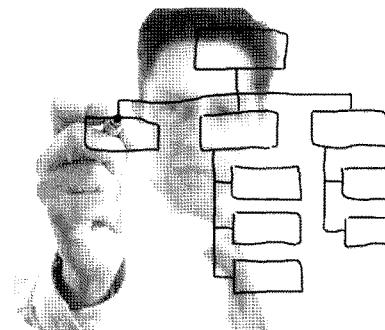
## ◎ 품질관련

- 신제품(NEP)인증, 성능인증제도, 품질경영인증시스템(ISO), 해외규격인증, 싱글PPM 품질혁신제도 등이 대표적임

## 3) 활용방안

### ◎ 기업관련

- 창업 1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이 기술평가와 기술보증(4,000만원) 조건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벤처기업 확인 추진을 권장함
- 참고로, 창업한지 1년이 경과한 후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과 경영실적, 기술보증(8,000만원)의 조건 등 보다 엄격한 내용들이 충족되어야 함
- 한편 창업한지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의 인증 내지는 확인을 추진하여 기술과 경영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경쟁력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함
- 기업 확인이나 인증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업은 기술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보유기술 내용을 기술성, 시장성, 경쟁성 및 수익성 측면에서 객관적이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서류화 작업에 보다 많은 노력을 집중해야 함



### ◎ 기술관련

- 제품의 공공구매 방식을 이용한 제품의 판로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대표적인 기술인증제도인 신기술(NET)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과 관련한 기술을 대외적으로 인증 받는 것이 중요함

### ◎ 품질관련

- 대표적인 품질관련 제도인 신제품(NEP)인증을 비롯하여 성능인증제도, 품질경영인증시스템(ISO), 해외규격인증, 싱글PPM,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제품생산 공정의 표준화 및 합리화를 통해 최적의 생산 공정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함
-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외적으로 제품 매출을 활성화하기 위해同樣도를 적극 활용해야 함

▶ 다음호에 계속